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5. 5. .
제출자 구미시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설치
- 행정조직 개편과 신규행정 소요인력에 따른 보정정원사용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코자 함

□ 주요내용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402명 ⇒ 1,445명(43명 증원)

• 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계	본청	의회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행	1,402	532	25	79	139	258	369
조정	1,445	567	25	80	142	260	371
증감	+43	+35		+1	+3	+2	+2

• 직급별 정원조정

구분	합계	정무직	일 반 직									기 능 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1,402	1	1,030	1	10	71	238	326	247	137	308	3	25	43	93	144	1	34	28	
조정	1,445	1	1,080	1	10	72	253	336	259	149	302	5	25	41	92	139	1	34	27	
증감	+43		+50			+1	+15	+10	+12	+12	△6	+2		△2	△1	△5			△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명시(제3조관련, 별표)
-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규칙으로 정함(제4조관련 신설)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시행지침
(2004. 12. 18)
- 행자부 자제12200-247('03. 5. 9)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1,402”를 “1,445”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7”을 “1,420”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 부칙 제3항중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는 행정9급으로 환원한다.”를 “여유기구설치시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2005. 5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45	567	25	142	80	260	371
정무직	소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계	1,080	439	15	78	63	123	362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2	23	2	3	4	13	27
	6급	253	122	5	11	17	35	63
	7급	336	158	6	18	23	38	93
	8급	259	101	1	32	14	27	84
	9급	149	29		13	4	8	95
별정직	소계	27	8		13		6	
	5급상당							
	6급상당	12	2		10			
	7급상당	15	6		3		6	
	8급상당							
연구직	소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소계	34			34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기능직	소계	302	118	10	17	17	131	9
	6급	5	1				4	
	7급	25	13				12	
	8급	41	14	1	1	2	23	
	9급	92	28	7	8	5	43	1
	10급	139	62	2	8	10	49	8

비용소요 추계서

1. 범규안건 및 관련조문

-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재난안전과 신설, 혁신정책담당관 여유기구 설치
- 정원 : 1,402명 ⇒ 1,445명(순증43명 : 5급1, 6급15, 7급9, 8급12, 9급6)

3. 비용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920,666	
○ 인건비		1,415,227	
- 기본급		662,377	
	• 5급	25,917	2,159,800원 × 1명 × 12월 = 25,917,600원
	• 6급	312,606	1,736,700원 × 15명 × 12월 = 312,606,000원
	• 7급	135,604	1,255,600원 × 9명 × 12월 = 135,604,800원
	• 8급	138,369	960,900원 × 12명 × 12월 = 138,369,600원
	• 9급	49,881	692,800원 × 6명 × 12월 = 49,881,600원
- 수 당		355,020	
	• 기말수당	110,396	662,377,000원 × 1/6 = 110,396,197원
	• 정근수당	104,876	662,377,000원 × 1.9/12 = 104,876,358원
	• 정근수당 가 산 액	35,040	(1,560,000원×1명) + (1,320,000원×15명) + (720,000원×9명) + (600,000원×12명) = 35,0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70,748	(9,088원×1명×20시간×12월) + (7,711원×15명×20시간×12월) + (6,919원×9명×20시간×12월) + (6,200원×12명×20시간×12월) + (5,560원×6명×20시간×12월) = 70,748,160원
	• 가족수당	33,960	(360,000원×37명) + (480,000원×43명) = 33,960,000
- 정액급식비		67,080	130,000원 × 43명 × 12월 = 67,080,000원
- 교통보조비		63,960	(140,000원×1명×12월)+(130,000원×24명×12월)+(120,000원×18명×12월)= 63,960,000원
- 명절휴가비		82,797	662,377,000원 × 1.5/12 = 82,797,125
- 가계지원비		137,995	662,377,000원 × 2.5/12 = 137,995,208
- 연가보상비		45,998	662,377,000원 × 1/12 × 1/24 × 20일 = 45,998,403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물건비		105,015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	300,000원 × 1명 × 12월 = 7,200,000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35	45,000원 × 43명 = 1,935,000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	100,000원 × 1명 × 12월 = 2,400,000원
-	직급보조비	67,680	(250,000원×1명×12월)+(155,000원×15명×12월)+(140,000원×9명×12월)+(105,000원×12명×12월)+(95,000원×6명×12월) = 67,680,000원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800	50,000원 × 43명 × 12월 = 25,800,000원
○ 이전경비		400,424	
-	성과상여금	40,026	(1,377,140원×1명) + (1,144,850원×15명) + (963,760원×9명) + (794,290원×12명) + (666,050원×6명) = 40,026,200원
-	연금부담금	162,450	
	• 연금부담금	120,294	1,415,227,000원 × 8.5/100 = 120,294,295원
	• 퇴직금수당부담금	39,581	1,415,227,000원 × 2.7968/100 = 39,581,069원
	• 재해보상부담금	2,575	1,415,227,000원 × 0.182/100 = 2,575,713원
-	국민건강보험	30,498	1,415,227,000원 × 2.155/100 = 30,498,142원
-	연금지급금	5,000	5,00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u>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02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77명</u> 2. (생략)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u>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신설></u>	<u>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45</u> ----- ----- 1. ----- : <u>1,420명</u>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u>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u> 제4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u>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